

條例(案) 檢討報告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주요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 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인구 15만이상 20만미만의 시 : 3실·국이내·18개실·과·담당관이내
②~⑥항 생략
- 동규정 제24조(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의결) 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 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시본청에 1개과를 감축하고 총무국에 두는과중 세무과·회계과를 세무회계과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이관, 조정 하며, 보건진료소중 석산 진료소를 폐지하고, 토지 분할에 따른 보건 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